

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(제127조 관련)

보고사항	보고기한
1. 발전용원자로설치자·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피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방사선관리에 관한 사항	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2.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방출한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출량의 3개월간에 대한 평균치 및 최고치	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3. 삭제 <2025. 10. 23.>	
4. 핵연료물질사용자 가. 핵연료물질의 재고량에 관한 보고서 나.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·저장·배출 및 처분 현황	해당 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5. 허가사용자 및 폐기시설 등 건설·운영자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·취득(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명서류 포함)·사용·판매·보유·보관·처리·저장·배출 및 처분 현황	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6. 원자력관계사업자(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) 가.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나.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(방사선투과검사만 해당한다) 다.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라. 선량계의 훼손·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판독특이사항 현황 마.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장교육 결과	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매 작업 종료 시 마다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발생 즉시 직장교육을 실시한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7. 원자력관계사업자(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)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 가. 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 나.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운반물 현황	해당 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 해당 연도 경과 후 1개월

다.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	이내 해당 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
8. 업무대행자	
가. 방사능 오염제거 실적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나.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·처리 및 운반 실적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다. 사용시설 등의 설치 감리실적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라. 방사선안전관리실적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마. 방사선원 누설점검 실적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9. 관독업무자	
영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독특이사항 현황	발생 즉시